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18
----------	-------

발의연월일 : 2025. 8. 18.

발 의 자 : 김상훈 · 김선교 · 윤한홍
이헌승 · 고동진 · 강대식
이달희 · 최보운 · 신동욱
김예지 · 안철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비용의 일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하여 국가전략기술산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앞세워 자국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제도가 없어 타국과의 가격 경쟁 등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산업에 있어 국내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또는 생산세액공제금액 중 최저한세액 등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환급하여 주는 등 국가전략기

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통하여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자 함(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인공지능”을 “인공지능, 소형 모듈원자로, 양자컴퓨터, 클라우드컴퓨팅”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이 조에서”를 각각 “이 조 및 제144조의2에서”로 한다.

제2장에 제10절의6(제100조의3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의6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35(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사업(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관련 제품,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소형모듈원자로, 양자컴퓨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생산하여 2035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비용에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재화

를 판매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요건

가. 해당 재화가 국가전략기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의하여 생산될 것

나. 해당 재화의 최종 생산공정이 국내에 소재한 생산시설에서 이루어질 것

2. 공제비율: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 다만,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의 경우 가목, 중견기업의 경우 나목의 비율을 따른다.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나.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0

다. 그 밖의 경우: 100분의 15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별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의 100분의 25를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세액공제대상 생산수량 및 생산관련비용을 보고하여야 하고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생산세액공제대상 생산수량의 보고, 생산관련비용의 산정 및 보고, 세액공제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00조의35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제100조의35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보다 적어서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과, 제100조의35제2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한다.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4조의2(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 등에 대한 환급 특례) ①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24조에 따

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3에서 “미공제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자 또는 제144조의3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의 환급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⑤ 내국인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미공제금액에 대하여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미공제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의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 등에 대한 미공제금액 환급 권리의 양도 특례) ① 제144조의2에 따른 미공제금액의 환급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제144조의4(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에 대한 환급 특례) ① 203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에 대하여 제100조의35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5에서 “미공제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내국인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미공제금액에 대하여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미공제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의5(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에 대한 미공제금액 환급 권리의 양도 특례) ① 제144조의4에 따른 미공제금액의 환급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5, 제144조의4 및 제14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관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 등에 대한 환급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의2 및 제14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나. (생략)

3. (생략)

② ~ ⑥ (생략)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

-----인공지
능, 소형모듈원자로, 양자컴퓨
터, 클라우드컴퓨팅-----

가.·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생략)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1) (생략)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사업(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관련 제품,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소형모듈원자로, 양자컴퓨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생산하여 2035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비용에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요건

가. 해당 재화가 국가전략기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의하여 생산될 것

나. 해당 재화의 최종 생산공정이 국내에 소재한 생산시설에서 이루어질 것

2. 공제비율: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 다만,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의 경우 가목, 중견기업의 경우 나목의 비율을 따른다.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나.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0

다. 그 밖의 경우: 100분의 15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별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 ③ (생략)

④ 삭제

<신설>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의 100분의 25를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세액공제대상 생산수량 및 생산관련비용을 보고하여야 하고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생산세액공제대상 생산수량의 보고, 생산관련비용의 산정 및 보고, 세액공제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⑤ 제100조의35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제1

<신 설>

00조의35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보다 적어서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과, 제100조의35제2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한다.

제144조의2(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 투자 등에 대한 환급 특례) ①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3에서 “미공제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자 또는 제144조의3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의 환급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

<신 설>

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⑤ 내국인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미공제금액에 대하여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미공제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의3(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 투자 등에 대한 미공제금액 환급 권리의 양도 특례) ① 제144조의2에 따른 미공제금액의 환급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

<신 설>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제144조의4(국가전략기술사업 국
내생산에 대한 환급 특례) ①
203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
세연도까지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에 대하여 제100조의3
5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
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한
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
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5에서 “미
공제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는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
아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신 설>

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내국인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미공제금액에 대하여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미공제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의5(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에 대한 미공제금액 환급 권리의 양도 특례) ① 제144조의4에 따른 미공제금액의 환급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